

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고인	대표자	한 글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
		한 자	
	상 호		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

변경내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. 상호 2. 성명 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 3. 영업소소재지 4. 자본금 5. 기술자 6. 주택관리사			※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·퇴사일 등을 적습니다.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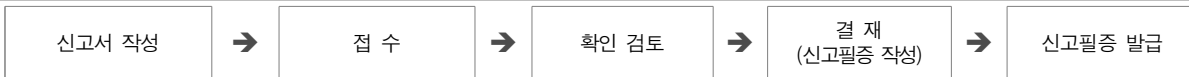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(주택담당부서)